

환경부령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5호마목2)나) 중 “100킬로그램”을 “50킬로그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